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유선	상담일시	2020.5.6
성명	조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서면으로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참여해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서면으로 진행되더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, 지식을 전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며, 대가를 수수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사내 메일	상담일시	2020.5.28
성명	이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지자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봉사활동에 참석하면 2만원 가량의 참여수당을 수수하게 되는데, 이 경우 외부강의로 신고하여야 하나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해당 활동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판단되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사내 메일	상담일시	2020.6.17
성명	조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모 사립대학에서 진행하는 철도 NCS 모듈 관련 책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직무와 관련하여 “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, 기고 등”을 수행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사내 메일	상담일시	2020.6.17
성명	조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모 사립대학에서 진행하는 철도 NCS 모듈 관련 책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</p> <p>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?</p> <p>청탁금지법 판례집 사례를 참조하였을 경우 국가연구기관의 보고서 집필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, 이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직무와 관련하여 “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, 기고 등”을 수행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 - 국가연구기관의 보고서 집필은 연구, 출판과는 성격이 달라 이 경우는 보고서 집필이 아니라 출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사내 메일	상담일시	2020.7.27
성명	이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직업능력개발(국가기술자격)과정에 강사로 출강하게 되었습니다. 1회 이상 강의를 시행할 예정인데, 외부강의 횟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강 시 강의 주제·과목·수강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횟수를 판단합니다. - 다만, 과목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 실질적으로 다른 강의라 할 수 있다면 각각 1회의 강의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유선	상담일시	2020.8.14
성명	박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월 3회 이상 모 국립대학교에 출강 예정입니다. 이 경우 3회 이상 출강이 가능한지 여부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.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. - 아울러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은 사전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메일	상담일시	2020.8.17
성명	정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모 공공기관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 임기는 2년이고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공단의 직원인데 다른 기관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.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. - 외부위원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고 회의형태이기 때문에 외부강의에 해당됩니다. - 따라서 연 1회 정기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단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유선/메일	상담일시	2020.9.2
성명	박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KOICA에서 저개발국가(몽골) 지원을 위한 사업형성단계전문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.</p> <p>전문가 자문업무 수행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 -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,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, 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활동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			

<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요청 처리>			
상담유형	메일	상담일시	2020.10.20
성명	김OO	소속	OO본부
상담내용			
<p>지자체 공법심의에 서면으로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?</p>			
처리결과			
<p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 등은 "직무관련성"이 있고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,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" 인 경우입니다 -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			